

[별표 3의3] <신설 2015.8.21., 개정 2019.10.24., 개정 2023.10.04.>

사료명칭을 세분화하는 기준(제7조제3항 관련)

1.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당 동일한 사료명칭의 사용(성분등록)은 1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배합사료의 명칭을 성장단계는 동일하나 동물의 생산능력 또는 계절 등에 따라 등록성분을 달리하여 세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명칭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를 순서대로 부여(예 : 비육돈1, 비육돈2) 하거나, 주 제품명으로 구분(주 제품명을 괄호로 표시, 예 : 비육돈(제품A), 비육돈(제품B)) 또는 아라비아 숫자와 주 제품명을 혼용하여 구분(예 : 비육돈1(제품A), 비육돈2(제품B)) 할 수 있으며,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.
 - 가. 동물에 필요한 영양상 근거·원료사용비율·명칭의 세분 필요성(축종, 용도, 수출 등) 등이 분명하여야 하며, 단순히 등록성분의 함량을 달리하여 명칭을 세분할 수 없다.
 - 나. 주 제품명은 1개 사료명칭에 1개 주 제품명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주 제품명은 여러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주요 원료의 함량비율이 90% 이상 동일한 경우(육포 등 등록성분을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외)에만 적용한다.
 - 다. 주 제품명을 등록한 경우 보조 제품명은 등록없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(동일 사료로 간주)
 - 라. 보조 제품명은 성분등록증에 등록하는 것이 아닌 포장재나 수입신고 서류 등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것임
 - 마. 필요한 경우 동일 주 제품명을 여러 사료명칭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
 - 바. 주 제품명을 등록한 경우 등록되지 않은 제품명을 표시·광고하는 것은 표시사항 위반 등에 해당됨
 - 사. 주 제품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포장재 등에 표시된 제품명별로 자가품질검사 및 수입신고 등을 각각 적용함
 - 아. 애완동물용은 가급적 아라비아 숫자 대신 주 제품명으로 구분을 권장함
2. 실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성분량에 한하여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달리하여 그 명칭 앞에 "주문"을 표시하여야 한다(예 : 주문큰소비육후기).
3. 제8조제7항에 따른 유기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앞에 "유기"를 표시하여야 한다(예 : 유기큰소비육후기).
4. 그 밖의 동물·어류용 배합사료는 그 명칭 앞에 "실험"·"애완(반려)"·"사육" 또는 "관상"을 표시하여야 한다(예 : 실험어린이, 애완어린이, 반려어린이, 사육육성원앙새, 관상어린이금붕어)
5. 사료명칭은 "성장단계 + 동물명"으로 작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체 성장단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"성장단계"는 생략하고 "동물명" 또는 "동물종류"로만 작명할 수 있으며(예 : 실험마우스, 애완고양이, 반려고양이, 사육청둥오리, 관상어류), 애완(반려)동물용 사료의 경우 품종·체중·급여목적(주식·간식)으로 세분할 수 있다.(예 : 반려육성고양이-렉돌, 4~7kg, 간식)
6. 미생물제를 이용해서 발효한 사료는 그 명칭 앞에 "발효"를 표시할 수 있으며(예 : 발효대두박) 균주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(별표 15 제3호자목 참조).
7.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는 제1호부터 제6호를 준용할 수 있으며, 세부 사용기준은 아래와 같다.
 - 가. 비타민제 중 명칭에 아라비아 숫자가 있는 경우 등은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은 곤란하고 주 제품명을 괄호로 표시해서 구분 가능
 - 나. "주문", "유기", "발효", "실험", "애완(반려)", "사육" 또는 "관상"이라는 표시 가능